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b>제795호 2021. 3. 17(수)</b></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제2021-41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	3
제2021-47호 도로명주소 고시 .....	4
제2021-48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	6

## 공 고

제2021-400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9
제2021-4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11
제2021-412호 2021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	12
제2021-415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제2021-416호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7
제2021-417호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4
제2021-423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3

제2021-4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73  
 제2021-443호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 76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1-9호 거창군 체육관 시설 개방 제한(휴관) 안내 공고 ..... 83

<b>회 람</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 거 창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2. 사업지구의 명칭 : 2021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 1,166필지, 517,849m<sup>2</sup>
  - 가. 영승지구 :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001-1번지 일원 / 321필, 122,122m<sup>2</sup>
  - 나. 외탐지구 :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234-3번지 일원 / 305필, 174,919m<sup>2</sup>
  - 다. 양지지구 :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82번지 일원 / 386필, 185,475m<sup>2</sup>
  - 라. 수옥지구 :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73번지 일원 / 154필, 35,333m<sup>2</sup>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문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072-56 등 6건
- 변경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1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랐)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6-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072-56	20210317	20090702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56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웅양로 1023-19	20210317	20091228	행정구역 웅양을 이용하여 웅양로로 명명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849-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189-39	20210317	20090401	금귀봉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처하던 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8-11	20210317	20090401	마을 남서 뒷산이 말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8-9	20210317	20090401	마을 남서 뒷산이 말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17 (유빌리지아파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13 (유빌리지아파트)	20210317	20090401	상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여섯번째 도로	변경( 분할)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1-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148-14	20210317	20090401	중앙로를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부여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제4항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7.

거창군수

- 고시대상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1길 35 등 20건

연번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고시일자	통보대상
(별지 참조)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상세주소는 건물 내에서의 위치 찾기 및 우편물 수령 등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부여하는 주소이며, 건물 및 소유권 현황 등은 관련 공적장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조서

연번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고시일자	통보대상
1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1길 35	3층 2층 1층	301 201,202 101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2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1길 52	3층 2층 1층	301 201,202 101,102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3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2길 34	3층 2층 1층	301 201,202,203 101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4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4길 8	3층 2층 1층	301, 302, 303 201,202,203,204 101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5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4길 16	3층 2층 1층	301 201,202,203 101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6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5길 27	3층 2층 1층	301, 302, 303 201,202,203,204 101,102,103,104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7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6길 8-16	4층 3층 2층 1층	401 301 201,202,203 101,102,103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8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12	3층 2층 1층	301, 302, 303, 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9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1길 21	4층 3층 2층	401, 402, 403, 404, 405 301,302,303,304,30 5 201,202,203,204,20 5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0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4길 31-13	4층 3층 2층	401, 402 301,302,303 201,202,203,204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1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100	3층 2층 1층	301, 302, 303 201,202,203,205,20 6 101,102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2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132	3층 2층 1층	301 201,202 101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3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길 146	3층 2층 1층	301, 302 201,202,203 101,102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4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5길 25	3층 2층 1층	301, 302 201,202,203 101,102,103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5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67	3층 2층 1층	301, 302, 303 201,202,203,205,20 6 101,102,103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6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76	3층 2층	301, 302 201,202,203,205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7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86	3층 2층 1층	301, 302, 303 201,202,203,205,20 6 101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8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22	3층 2층 1층	301, 302, 303, 304, 305, 306 201,202,203,204,20 5,206,207 101,102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19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38	3층 2층 1층	301, 302 201,202,203,205,20 6 101,102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20	상세주소 부여(직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47	3층 2층 1층	301, 302, 303 201,202,203,205,20 6 101,102,103	2021. 3. 17.	소유자 및 임차인



거창군 공고 제2021 - 400호

감악산권 친환경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소로 2-27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감악산권 친환경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소로 2-27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감악산권 친환경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소로 2-27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남상면 무촌리 일원

다. 사업규모 :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면적 : 49,491㎡
- 연장 및 폭원 : L=2,095m, B=10.0m

###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3. 15.(월) ~ 2020. 4. 12.(월)

나. 공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3.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1. 3. 24.(수) 14:00

나. 장소 : 청연경로당(거창군 신원면 청연길 13)

###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또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으로 서면제출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 고 근 거 : 공익사업에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2.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4. 사업의 인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도로구역 결정 : 2017.06.19)
5. 송달할 내용 : 동 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수용예정통보
6. 공 고 사 유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미등기·주소 및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 후 공고기간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송달로서 협의에 갈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 공탁 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함.
7. 공시송달토지 손실보상협의 내역 : 별첨 공시송달내역 참조
8. 계약체결(보상협의)기한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9. 계약체결장소 : 박재용 법무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18(☎055-945-6700)]
10.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액 계좌입금
11.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보통예금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각 1통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 국토교통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1통

2021. 03. 11.

거      창      군      수

# 2021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0.

거창군수

## 1. 사업개요

###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거창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 ※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로, 대상자 선정 조회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및 압류가 없는 차량
  - ※ 지방세 체납 및 압류가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이 제한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조건의 부착(교체)차종에 적합한 차량
  -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 건설기계 및 장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착 제한 (장치제작사에서 확인)

□ 신청기간 : 2021. 3. 17.(수) ~ 2021. 3. 30.(화)

□ 사 업 비 : 66백만원

- **지원규모 : 4대**(대당 16,500천원 기준, 장치종류에 따라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추경으로 물량 변경될 시 사업 미선정자 중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지원

□ **지원금액** (단위:천원)

구 분	지 계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 **신청방법**

- ① 신청자는 [붙임1]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교체) 가능여부를 협의 후 장치 제작사를 통해 사업신청
- ② 부착(교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장치제작사가 거창군으로 사업 승인 신청
  - ➔ 사업신청시 차주와 장치제작사의 계약서 원본 제출
  - ➔ 장치 부착(교체) 신청과 보조금의 청구 · 수령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

□ **교체 가능여부 문의처 : 건설기계 엔진 제작사**

No	제작사	연락처	No	제작사	연락처
1	(주)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031-940-2560	4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2	엑시언	031-270-6300	5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
3	(주)크린어스	1577-9014	6	(주)세라컴	02-2628-0900 041-531-0657

**2. 지원조건**

- 부착가능여부 확인을 한 장치제작사가 거창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자 선정된 건에 한하여 장치 부착(교체) 후 보조금을 지원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 부착(교체)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장치제작사로 신청하여야 함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적용 조건에 적합한 인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의무사용기간(2년) 내 탈거하거나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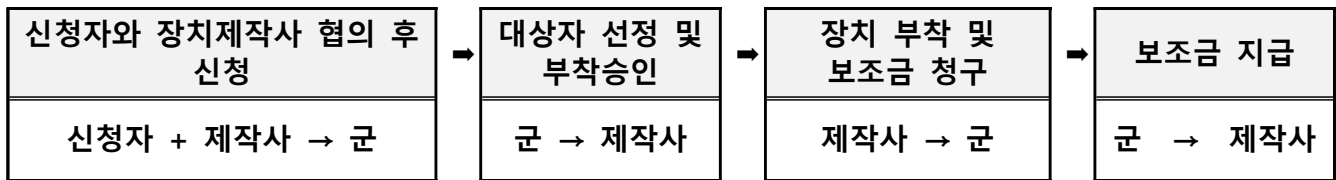
지급을 제한하거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을 회수함

- ※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21. 2. 환경부)」에 따름
-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게 거창군이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해야 함
- 장치는 임의 탈거 불가하며, 의무운행기간 후 차량 말소 시 거창군에 반납해야 함

### 3.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 : ①→②→③ 순]

- ① 생계형 건설기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배기량(CC)이 높은 건설기계
- ③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건설기계(연식이 없는 경우 등록일자 적용)

### 4. 추진 절차



#### 가. 신청 접수 ➡ “교체가능여부 확인 후 장치제작사로 신청”

- [제출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나.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통보일시 : 2021. 4. 9.(금) 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

#### 다.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장치제작사에서 진행”

- 청구기한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저감장치 제작 지연 등의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 청구방법 : 등기우편
  - 장치 부착 완료 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 이행 후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각 1부.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청립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치 제작사) 각 1부.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협회작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보조금 지급 : 청구서류 접수한 날로 30일 이내, 장치제작사에게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5. 유의사항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21. 1. 환경부)」에 따름

- 붙임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
2. [별지 제1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3.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5.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6. [별지 제5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7. [별지 제6호 서식]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청립 이행서약서
  8.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지원 포기신청서

[붙임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장치명(배기량 기준)
1	(주)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031-940-2560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14톤급
2	엑시언	031-270-6300	○ 지게차 : 2톤급
3	(주)크린어스	1577-9014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4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5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6	(주)세라컴	02-2628-0900 041-531-0657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2021년 거창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을 직접 작성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상차량 현황

차량번호		소유자		저소득 해당 여부 유□, 무□	
차량 총중량	kg	연식		원동기 형식	
저속운행 여부	유□, 무□	원동기 형식		보조금                          만원	
장치 제작사		장치 종류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 내용 숙지 후 ( )안은 자필로 작성

- 지원받는 상기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합니다.
- 장치부착 후 의무사용기간은 (2년), 엔진교체 후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반납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음
- 수출·폐차 등 차량 말소 시에는 (장치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 부착 및 개조와 관련한 보증(A/S)기간은 구조변경일로부터 ( 3년 )까지이며, 장치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 부착(교체)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가능하며,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참고사항

- 계약서 원본은 거창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본은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가 1부씩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장치 제작사	차량 소유자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차량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 · 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 · 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 / 1,000km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I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 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 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연 500ℓ)**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교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_\_\_\_\_ (인), 연락처( )

확인자<sup>5)</sup>(장착장) \_\_\_\_\_ :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연락처( )

책임자<sup>6)</sup>(제작사) \_\_\_\_\_ : (직위) \_\_\_\_\_ (성명) \_\_\_\_\_ ,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sup>1)</sup>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계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노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sup>2)</sup>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sup>3)</sup>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sup>4)</sup>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sup>5)</sup>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sup>6)</sup>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거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이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별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이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 ○○○○○○○○-○\*\*\*\*\*)

업체명 : 대표 : (인)

## 보조금 지원 포기신청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기를 신청합니다.

① 사업명	
② 성명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차량번호	
⑥ 지원금액	
⑦ 포기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정(매매, 폐차 등) <input type="checkbox"/> 장치 부착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

2021년      월      일

신청자명 :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21- 415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거창군수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감면율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체납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신설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안 제9조의2)
  - 감면기한 연장: 2020. 12. 31 → 2021. 12. 31
  - 감면율 확대: 9단계(10%~50%) → 14단계(10%~75%)
-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 신설(안 제9조의3)
  -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세목: 2020년 이후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증가산금
  - 감면제외: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 조문 정비
  - 「지방세특례제한법」 반영에 따라 감면 삭제(안 제3조)
  - 일몰도래 감면 연장(안 제5조, 제7조, 제9조)

#### 3. 붙임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재무과
- 우편번호: 51032, 전화: 055-940-3231, 팩스: 055-940-3219  
이메일: ekpark921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 중 “건축물”을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 하고, “감면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도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도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u>  <u>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u>  <u>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u>  <u>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lt;삭 제&gt;</p>
<p><u>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u>2021년 12월 31일</u>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3. (생 략)</p>	<p><u>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u>2023년 12월 31일</u>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u>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u>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21년 12월 31일</u>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u>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u>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23년 12월 31일</u>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p> <p>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u>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u>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p> <p>1. <u>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u> 2. <u>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p> <p>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u>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u>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u>군세</u></p>

현행	개정안
	<p><u>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u> <u>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u> <u>31일까지 면제한다.</u></p> <p>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p> <p>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 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별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제9조의2 관련)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u>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u>	<u>100분의 50</u>
<u>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u>	<u>100분의 55</u>
<u>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u>	<u>100분의 60</u>
<u>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u>	<u>100분의 65</u>
<u>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u>	<u>100분의 70</u>
<u>100분의 70초과</u>	<u>100분의 75</u>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

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1- 416호

거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2020. 12. 29. 시행)이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함
  -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안 제3장 제1절)
  -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3장 제2절)
- 주민세 세율을 정함
  -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정함(안 제6조)
  - 재산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함(안 제7조)
-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신고대상 :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건축물 신·증축 등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

3. 붙임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재무과
- 우편번호:51032, 전화: 055-940-3231, 팩스: 055-940-3219  
이메일: ekpark921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 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u>균등분</u>	제1절 <u>개인분</u>
<p><u>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개인의 세율</u></p> <p>가. <u>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u></p> <p>나. <u>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u></p> <p>2. <u>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u></p>	<p><u>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u></p>
제2절 <u>재산분</u>	제2절 <u>사업소분</u>
<p><u>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u></p>	<p><u>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u></p>
<p><u>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u></li> <li>2. <u>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u></li> <li>3. <u>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u></li> <li>4. <u>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u></li> <li>5.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u></li> <li>6. <u>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u></li> <li>7. <u>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u></li> </ol>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 (생략)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거창군 공고 제2021-417호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거 창 군 수

###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관련 용어와 서식을 개정함

#### 2.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 용어를 변경함
  -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안 제2절)
  -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3절, 제6조 내지 제7조)
-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함(별지제3호, 제4호, 제6호 서식)

#### 3. 붙임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재무과
- 우편번호:51032, 전화: 055-940-3231, 팩스: 055-940-3219  
이메일: ekpark921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제1절 총칙”을 신설하고, “제1절 균등분”을 “제2절 개인분”으로 하고, “제2절 재산분”을 “제3절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5조 중 “주민세(균등분)”을 “주민세”로 한다.

제2절(기존 제1절) 뒤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하고,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하며, 제2항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 중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하고,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경우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를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균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u></p> <p>제3장 주민세</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u>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u>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절 균등분</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2절 재산분</p> <p>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u>주민세 재산분</u>(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u>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u>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u>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u>에 등재하고 별</p>	<p><u>거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u></p> <p>제3장 주민세</p> <p>제1절 총칙</p> <p>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u>주민세 비과세 처리부</u>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절 개인분</p> <p>제5조의2(<u>과세대장 정리</u>) 부과부서의 장은 <u>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u>하여야 한다.</p> <p>제3절 사업소분</p> <p>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u>주민세 사업소분</u>(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u>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u>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u>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u>에 등재하고</p>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경우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일련 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 감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팀원	팀장	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m²)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팀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sup>2</sup>)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거창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팀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sup>2</sup>)

□ 「거창군 군세 조례」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공고 제2021-423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1일

## 거 창 군 수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명예수당 지급기준 중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 변경(안 제7조)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종량제봉투 수수료 면제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종량제봉투 지원

##### 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안 제10조)

1)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50만원

##### 다. 부칙

제2조(적용례) ① 제7조 및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원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 3. 개정 조례안: 붙임

####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055-940-3092/3089

이메일: tjsl0130@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일자	2021. 3.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 1. 제안이유

명예수당 지급기준 중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 변경(안 제7조)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종량제봉투 수수료 면제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종량제봉투 지원

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안 제10조)

1)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50만원

다. 부칙

제2조(적용례) ① 제7조 및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원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2)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392,000천원 확보(322,000천원 추가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1. ~ 3. 31.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기존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50만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원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li> <li>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예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 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li> <li>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li> </ol> </li> <li>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예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li> <li>나.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li> </ol> </li> <li>2. 사망위로금: 30만원</li> </ol>	<p>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li> <li>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li> <li><b>3. 국가보훈대상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b></li> </ol> <p><u>&lt;삭 제&gt;</u></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예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 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li> <li>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li> </ol> </li> <li>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예수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li> <li>나. 보훈명예수당: <b>월 7만원</b></li> </ol> </li> <li>2. 사망위로금: <b>50만원</b></li> </ol>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 2011.04.04 조례 제2021호  
(일부개정) 2013.01.09 조례 제2117호  
(일부개정) 2013.09.25 조례 제2159호  
(일부개정) 2014.04.02 조례 제2182호  
(일부개정) 2014.07.30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2.10 조례 제2275호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2346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2474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25.)
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1.09. 2016.12.28.)호삭제(제7조~제9호 2018.12.26.)

###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예우 및 지원

### 제4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 3. 국가보훈대상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 제8조(공공시설 이용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개정 2013.01.09)

## 제9조(삭제 2013.9.25.)

## 제3장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

##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1.09. 2013.09.25. 2016.12.28. 2018.12.26.)

### 1. 명예수당(호전부개정 2018.12.26.)

- 가.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 나. 보훈명예수당 :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호전부개정 2018.12.26.)

가.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나. 보훈명예수당 :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 50만원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0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 순위에 관하여는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 제4장 보칙

### 제14조(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개정 2013.01.09)

### 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개정 2013.01.09)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4.4, 조례 제2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및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3.01.09.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182호 개정2014.4.02.)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75호 일부개정 2015.12.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346호 일부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74호 일부개정 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원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7.>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체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 9. 15.>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12.2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22.]



#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군유임야내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행정대집행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15. ~ 2021. 3. 30.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집 행 일 : 2021. 03. 31. 오전 10:00
5.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2항, 제5조, 제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위 치	철거대상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명령 대상자		공시송달 사유
	물건종류	수량	면적		이름	주소	
가북면 용산리 377	정미소	1	123.2	원상복구 및 철거	변*옥	서울시 영등포구	기타사유 반송
	창고	1	44.7	원상복구 및 철거			
	축사	1	24	원상복구 및 철거			

### 7. 기타사항

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거창군청에서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사항 :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1-1호

##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거창군청 산림과

직위(직급): 산림과장(행정5급)

성 명: 최태환

위 사람은 2021년 02월 25일, 제2021-1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1년 03 월 15일

거창군수

제2021-1호

##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변\*옥 귀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2021년 01월 08일, 산림과-401(2021.1.8.)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물 등)을 2021년 01월 31일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거창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1년 3월 31일 10시	산림과	산림과장 (행정5급)	최태 환	포크레인임차비 55만원 폐기물처리비용 100만원 석면처리비용 350만원

2021년 3월 15일

거 창 군 수

직인

거창군 공고 제2021-443호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 6. 23. 시행)으로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안 제2조제2항)

- 1)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대행
- 2)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4. 예고기간 : 2021. 3. 15.(월) ~ 3. 25.(목)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라. 전화 055-940-3388, 팩스 055-940-3349, 이메일 nuuuri5729@korea.kr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일자	2021. 3. .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 1.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 6. 23. 시행)으로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안 제2조제2항)

- 1)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대행
- 2)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li> <li>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li> <li>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li>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li> </ol>

## 관계법령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체육관 시설 개방 제한(휴관) 안내 공고

코로나 19 백신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따라 체육시설 개방 제한 사항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거 창 군 수

- **시 설 명 : 거창군 체육관**
- **사용제한기간 : 2021. 3. 22.(월) ~ 예방접종 완료시 까지**
  - ※ 기간은 예방접종진행 상황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한(휴관) 사유 : 코로나 19 백신접종센터 운영**

[본조신설 2020. 12. 22.]